

영국사례 1

**언론이 취재대상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면
보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PCC는 『Daily Record』지의 2007년 9월 5일자 “Ferris의 세 번째 아이”와 “Ferris의 여아” 제하의 두 기사가 윤리강령 제1조(정확성)와 제3조(프라이버시), 제4조(위협) 및 제6조(아동위반)을 위반했다고 Carolyn Cunningham과 Paul John Ferris가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제기한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윤리강령을 일부 위반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으며 다른 쟁점들은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 딸의 이름과 함께 그 출생을 공개했고 ‘범죄자들의 세계’의 소식통을 인용해 (기사에서) ‘폭력배’로 묘사된 불만신청인(Ferris)이 아이의 출생을 비밀에 불임으로써 자신의 가족들을 보복 공격으로부터 보호

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출생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려 시도하지 않았으며, 인용된 소식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복의 위협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아이의 신원이 무단으로 차용되었으며 소제가 공공연하게 알려졌다고 항의했다. 불만신청인은 『Daily Record』지가 아이의 사생활을 낱낱이 공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만신청인(Ferris)의 유명세를 이용한 것은 아동과 관련한 윤리강령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자들이 불만신청인(Cunningham)이 전에 살던 집 밖에서 사흘간 대기하며 불만신청인의 아들에 관한 정보를 조사했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기자들은 이웃들이 떠나라고 요구했을 때야 비로소 철

수했다.

‘범죄자들의 세계’의 소식통을 근거로 기사를 썼던 『Daily Record』지는 문은 기사 발행 전에 불만신청인들과 접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Daily Record』지는 불만신청인들에게 공개편지나 후속 기사의 형식으로 문제의 기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그러나 『Daily Record』지는 기사가 불만신청인의 딸의 이름과 구체적인 거주지를 노출시킴으로써 신원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Daily Record』지는 어느 누구도 위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Daily Record』지는 불만신청인(Cunningham)의 아들에 대한 정보를 캐지 않았으며 불만신청인(Cunningham)이 전에 살던 집의 이웃들이 취재차 와 있던 기자들에게 떠나달라는 요구했던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PCC는 윤리강령은 저널리스트들이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의 출처를 보호하는 것을 당연하게 간주하므로 『Daily Record』지가 인

용한 소식통이 이번 사건에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조사할 수는 없었다. PCC는 언론이 불만신청인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판단했다. PCC는 편지나 별도의 기사를 실어주겠다는 제안을 불만신청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출생을 비밀로 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PCC는 『Daily Record』지의 후속 조치는 충분했다고 보았다.

또한 PCC는 유아의 이름과 유아와 불만신청인이 사는 동네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제3조 프라이버시와 제6조 아동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핵심 내용은 아이의 출생 사실 자체와 아이의 부모(불만신청인)가 보복 공격을 두려워하여 출생을 비밀로 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PCC는 유아의 이름, 출생 사실, 거주 동네 등 아이에 관한 정보는 피상적이었다고 보았고 아이의 이름과 출생이 아이의 출생증명서에도 나오므로 아이의 이름과 출생은 공적인 기록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PCC는 ‘위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제4조(위협)는 저널리스트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금지할 정도로 엄격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PCC는 제4조는 저널리스트들이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끝까지 취재하

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PCC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저널리스트들이 인터뷰를 거부한 어느 누구에게라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거나 따라다녔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

혔다. 또한 PCC는 위협받았다고 이야기 된 사람들이 직접 PCC에 불만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PCC는 제4조(위협)와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는 더 이상 쟁점이 될 만한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

영국사례 2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사적 사실을 보도한 경우 언론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영국 PCC는 익명의 불만신청인이 Swan Turton 변호인단을 통해 『OK! Magazine』이 윤리강령 제3조(프라이버시)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제의 기사는 어느 남자 유명인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기사는 남자 유명인사와 불만신청인이 ‘알코올중독자는 아무나 모여라(이하 알아모)’라는 모임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두 사람을 찍은 사진의 제목에서도 이들이 ‘알아모’ 모임에 출석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만신청인의 변호사는 문제의 기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알코올중독자이고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이는 언론에 전혀 알려진 적이 없던 내용인

데다 기사에는 ‘알아모’ 모임 밖에서의 불만신청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실어 불쾌감을 더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한 『OK! Magazine』지가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보낸 편지에 직접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OK! Magazine』지는 불만신청인이 문제 삼은 내용은 기사의 핵심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그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친구인 저명인사와 그 모임에 동행했던 것을 진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OK! Magazine』지는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알코올중독 치료에 관한 어떠한 세부사항을 신지 않았고 독자들은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저명인사 친구가 도덕적으로 잘 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알아모’ 모임에 참석하기만 한 것일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 주

장했다. 『OK! Magazine』지는 불만 신청인이 이 기사의 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불만신청인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으며 불만신청인이 문제 삼은 내용을 다시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PCC는 『OK! Magazine』지가 불만신청인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출판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PCC는 사진, 사진제목, 기사의 정보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들이 불만신청인의 ‘알아모’ 모임 참석과 관련해 불만신청인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불만신청인이 과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사실이며, 치료 전력을 불만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PCC는 판단했다.

한편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친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단지 돕기 위해서 ‘알아모’ 모임에 참석한 거라고 독자들이 여길 것이므로 윤리강령 조항을 위반한 일은 없다고 『OK! Magazine』지가 주장한 것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CC는 『OK! Magazine』지가 불만신청인이 그 모임에 혼자서 치료를 받으려고 갔었는지 등에 관해 알지 못했음에도 예상되는 불만신청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사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실제로 전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려 다닌 적이 있다는 사실이 후속적으로 폭로되었다는 정황을 봐도 『OK! Magazine』지가 부주의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서 비판했다. 『Canta』의 익명 기사는 몇몇 이성애자 남자들도 그 젊은 배우들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감옥에 갈 수 있을 거 같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Bay of Plenty Times』지의 칼럼은 예상치 못한 비판으로 마지막 문장을 뺐었는데, 『Bay of Plenty Times』지의 칼럼니스트가 성적 확대를 묵과하는 조잡한 『Canta』의 기사를 비판한 것과 앞서 언급한 『Bay of Plenty Times』지 칼럼의 두 번째 부분에서 변호사를 비꼬아 비판했던 내용을 연결시킨 것이다.

불만신청인은 『Bay of Plenty Times』지 칼럼의 두 번째 부분 전체 그리고 특히 마지막 문장이 부정확하고, 불공평하며, 불균형적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변호사에 관한 저급한 논평들은 의견을 가장하여 실증적인 증거나 이유 없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체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껄이는 농담들이 의견의 개진이라고 보지 않으며 저급한 언동을 할 목적으로 변호사들을 아동 학대에 연결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ay of Plenty Times』지의 편집자는 불만신청인에게 전달한 답변과 이후 뉴질랜드 신문평의회에서 밝힌 답변 모두에서 강력한 어조로 반응했다. 편집

뉴질랜드 사례 1

의견임이 명백한 내용의 경우 이에 대한 불만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Tauranga 도시의 변호사인 R. Lavén가 『Bay of Plenty Times』지의 2007년 10월 16일자 의견란에 게재된 기사들이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 등을 지키지 못했이라며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Bay of Plenty Times』기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불만신청을 초래한 두 번째 부분은 변호사를 비꼬는 미국 농담을 다른 방식으로 언급한 것이다. 한편 『Bay of Plenty Times』지의 칼럼니스트는 Canterbury 학생 잡지인 『Canta』가 인기 있는 젊은 영화배우들을 그들의 성적매력에 따라 평가한 익명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계속해

자는 그 칼럼은 순전히 그날의 논점들에 관한 칼럼니스트들의 의견일 뿐임을 명백히 했다. 편집자는 종종 해학과 풍자를 사용하여 그의 관점을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자는 만일 불만신청인이 그 칼럼을 맘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안 읽으면 그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신문들이 공중을 즐겁게 하거나 혹은 그들을 토론과 논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의견 기사들을 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번 사건의 경우, 칼럼은 『Bay of Plenty Times』지의 의견란에 분명히 실렸다고 판단했다. □

아님』을 특별히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편집장은 그 기사는 정확하고, 균형적이며, 공평한 것은 물론 『Herald』지가 그 행사를 다룬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기사를 작성한 저널리스트는 “그날 밤 더 가치 있는 행사들에 관하여 매우 적절하게 보도했다”며 불만신청을 한 불만신청인은 그 모임에 참가한 12,000명의 군중 중에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사례 2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개진이 중요하지만 모든 관점들이 하나의 기사에서 모두 대변될 수는 없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텔레비전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Benny Hinn이 Auckland에서 지난 2007년 6월 10일 개최한 모임에 관한 『Herald』지의 일요일 보도에 관하여 Thijs Drupsteen이 제기한 불만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Herald』지 일요일자가 부정확, 불공평, 불균형하게 불만신청인이 개최한 모임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은 2007년 6월 14일에 기자가 “모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열거했고 그 모임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기적적인 사건 중 어느 것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만신청인은 기자는 금요일 모임에만 참석했지만, 텔레비전 복음 전도사인 Benny Hinn은 세 번

의 행사를 열었고 불만신청인은 모두 참석했으며 균형적인 보도라면 기사에서 기자가 열거한 10가지 부정적인 점들과 최소한 동일한 수의 기적적인 사건과 치유의 간증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박스 모양의 표를 첨부하여 Benny Hinn 목사와 Dalai Lama를 비교했는데 그 내용이 균형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erald』지의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대답했다. 편집장은 “Benny Hinn 목사의 도움으로 목발을 더 이상 짚지 않아도 되는 기적을 체험한 참가자”와 대화하고 이를 보도한 것은 “결코 부정적인 행사만을 보도한 것이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편집장은 신문과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무엇이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편집장의 판단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결정에 신문의 판매부수가 좌지우지 된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 사건의 기사에서처럼 보도와 편집자의 판단이 모든 독자를 항상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신문이 더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길 원한다면 특별한 이해관계나 지대한 개인적인 관심들에 비위를 맞추는 일을 필요에 따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개진을 위해 존재한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모든 관점들이 하나의 기사에서 다 대변될 수 없으며 종종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고 본다. 종교적인 믿음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 점은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며 해당 기자는 그가

본대로 모임을 보도할 권리가 있다고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판단했다. □

호주사례 1

언론이 경찰을 통해 입수한 목격자들의 이름을 기사에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특히 목격자가 어떤 진술을 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Gold Coast Bulletin』지가 지난 2007년 10월 13일자 “글라이더 조종사, 산에서 수직하강하다 사망” 제하의 기사에 대해 Geoffrey Martin가 제기한 불만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기사는 한 행글라이더 조종사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사고 현장에 있던 세 명의 이름을 인용했는데 불만신청인이자 행글라이더 행사의 참가자였던 Geoffrey Martin, 사고를 당한 공군 상사 Mike Jones 그리고 사고 피해자의 친구인 Len Paton이었다. 기사는 소방대의 한 고위 관료도 인터뷰했는데 이 관료가 사고 현장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기사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이 동의 없이 언급되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그가 속한 협회에서 언론의 인터뷰를 만류하는 상황에서 마치 자신이 언론에 적

극적으로 협조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명성에 흠결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old Coast Bulletin』지는 불만신청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몇 가지 질문에 답변만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기사에 실린 불만신청인의 논평은 행글라이딩과 관련된 위험요소와 행글라이딩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관한 짧은 설명이었기 때문에 불만신청인의 의견이 기사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불만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불만신청인이

기사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찰에 의해 제공된 세부사항 때문인데, 추락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방식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람의 신원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할 지 걱정하는 불만신청인의 입장과 달리, 호주 언론평의회는 기사에서 불만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그 어느 것도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Gold Coast Bulletin』지가 익명을 요구했던 불만신청인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유감이나 이것 자체만으로는 호주 언론평의회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만신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만한 신원에 관한 다른 사실들이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언론이 경찰을 통해 입수한 목격자들의 이름을 기사에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특히 목격자가 어떤 진술을 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고 판단했다. □

호주사례 2

기사의 사실적인 부분과 관련 없는 제목을 사용한 경우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The Daily Telegraph』지가 아동 살인 전과자

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전과자가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제기된 불만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The Daily Telegraph』지는 문제의 기사에서 이 전과자가 거주 중인 곳이 초등학교 인접 지역임을 발견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몇몇 학부모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기사가 그릇된 사실을 담고 있고, 정보가 정직하고 온당한 방식으로 수집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았고 사실들이 부정확하게 전달된 데다, “우리 골목에 사는 맹수”라는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The Daily Telegraph』지는 이 전과자가 1999년에 출

소한 이래로 이 남자와 관련된 보도를 강경조로 일관되게 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The Daily Telegraph』지는 이 남자가 평생 가석방 상태이며 전자팔찌를 늘 차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의 행방이 어찌 되었는지 알리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이 전과자가 초등학교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The Daily Telegraph』지가 이를 보도한 것은 정당했다고 봤다. 또한 호주 언론평의회는 『The Daily Telegraph』지가 블로그 사이트에 다양한 관점을 올렸으며 Inside Edition 섹션에서는 범죄를 저지르

고 형을 마친 사람이 사회로 재편입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과 문제들을 탐색한 내용들을 게재한 것에 대해 평가했다.

호주 언론평의회는 『The Daily Telegraph』지가 전과자 문제를 다룬 전체적인 내용이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토론을 도모했다는 것은 공중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사이를 고려한 것이며 균형적인 보도를 하기 위해 매우 고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호주 언론평의회는 기사 제목에서 사용한 ‘맹수’라는 용어는 기사의 사실적인 부분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